

1. 대학원 학칙 개정

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을 제안을 위하여 공포함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6조 (전공의 변경)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과 동일 학과 내 전공 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. 단, 통합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. ② 신설	제16조 (학과 및 전공의 변경) ① 동일 대학원 내 학과변경은 석사학위 과정에 한해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으며 전공변경은 동일 대학원, 동일 학과 내 모든 학위과정에서 통산 1회 허가할 수 있다. 신설 ② 1항에 대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.	제 16조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9조 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과정은 3년 이상,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. 단,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1년 이상, 박사과정은 2년 이상으로 한다.	제19조 (수업연한) ①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이상, 박사과정은 3년 이상,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. 단,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1년 이상, 박사과정은 2년 이상으로 한다.	제19조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0조 (성적평가 및 평점)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: 2022.6.20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<th>평점</th><th>점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A+</td><td>4.5</td><td>95~100</td></tr> <tr><td>A</td><td>4.0</td><td>90~94</td></tr> <tr><td>B+</td><td>3.5</td><td>85~89</td></tr> <tr><td>B</td><td>3.0</td><td>80~84</td></tr> <tr><td>C+</td><td>2.5</td><td>75~79</td></tr> <tr><td>C</td><td>2.0</td><td>70~74</td></tr> <tr><td>F</td><td>0.0</td><td>69점 이하</td></tr> <tr><td>P</td><td>불계</td><td>합격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평점	점수	A+	4.5	95~100	A	4.0	90~94	B+	3.5	85~89	B	3.0	80~84	C+	2.5	75~79	C	2.0	70~74	F	0.0	69점 이하	P	불계	합격	제30조 (성적평가 및 평점)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: 2022.6.20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<th>평점</th><th>점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A+</td><td>4.5</td><td>95~100</td></tr> <tr><td>A</td><td>4.0</td><td>90~94</td></tr> <tr><td>B+</td><td>3.5</td><td>85~89</td></tr> <tr><td>B</td><td>3.0</td><td>80~84</td></tr> <tr><td>C+</td><td>2.5</td><td>75~79</td></tr> <tr><td>C</td><td>2.0</td><td>70~74</td></tr> <tr><td>F</td><td>0.0</td><td>69점 이하</td></tr> <tr><td>P(NP)</td><td>불계</td><td>불합격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평점	점수	A+	4.5	95~100	A	4.0	90~94	B+	3.5	85~89	B	3.0	80~84	C+	2.5	75~79	C	2.0	70~74	F	0.0	69점 이하	P(NP)	불계	불합격	제 30조 개정
등급	평점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+	4.5	95~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	4.0	90~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+	3.5	85~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	3.0	80~8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+	2.5	75~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.0	70~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F	0.0	69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	불계	합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	평점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+	4.5	95~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	4.0	90~9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+	3.5	85~8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	3.0	80~8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+	2.5	75~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	2.0	70~7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F	0.0	69점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P(NP)	불계	불합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62조 (대학원위원회)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부원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재무실장,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<개정: 2018.3.26>	제62조 (대학원위원회)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 대학원위원회는 부총장, 각 대학원장, 부원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교학팀장 , 재무실장 , 대학원교수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 <개정: 2018.3.26>	제62조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65조 (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)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국제교육원장, 재무실장,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	제65조 (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) ②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대외국제처장 , 재무처장 , 교학팀장 , 각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	제65조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칙 이하 내용 생략	부칙 현행과 같음 이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.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개정

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을 제안함.

현행	개정안	비고
제44조 (논문지도 위촉) ③신설	제44조 (논문지도 위촉)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,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 <신설: 2023. 10. 30.>	제 44조 신설
제64조 (학위논문 제출 부수)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,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. <개정: 2017. 9. 25., 2019. 6. 10.> 1. 석사 및 박사: 4부(산학과 5부) 2. 온라인 학위 논문 업로드	제64조 (학위논문 제출 부수) 최종 수정 통과된 학위논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, 대학원에 실인이 날인된 학위논문 인준지를 제출해야 한다. <개정: 2017. 9. 25., 2019. 6. 10.> 1. 삭제 2. 온라인 학위 논문 업로드	제 64조 개정

3.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

다음과 같이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을 제안함

현행	개정안	비고
제8조 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. 단,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(재단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03. 07.>	제8조 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 이 수여한다. 단,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(재단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03. 07.>	제8조 개정

4. 대학원 장학금 현황표 【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】 변경전

구분	대상자	지급 기준	지급액
진학장학금	A: 석사과정 신입생 중 입학일 기준 7개월 이내 본교 졸업자	A: 입학 첫 학기, 마지막 학기 (목회자양성·외국인장학금수혜자 제외)	A:수업료의 60% (박사과정 50%, 장려장학금 포함)
	B: 본교 평생교육원 12학점 이상 이수자	B: 입학 첫 학기	B:수업료의 10%
교직원장학금	본교 교직원 본인, 배우자, 자녀 (직원: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, 교수: 전임교원)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 *교역자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	수업료의 20%
교역자장학금	한국연합회 산하 정규직 교역자 본인, 배우자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이사장 추천자로 연간 2인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 *교직원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	수업료의 20%

* 대학원 장학금 현황표 【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】 변경후

구분	대상자	지급 기준	지급액
진학장학금	A: 석사과정 신입생 중 입학일 기준 7개월 이내 본교 졸업자 *석박사통합과정, 학석사연계과정 해당 없음	A: 입학 첫 학기, 마지막 학기 (목회자양성·외국인장학금수혜자 제외)	A:수업료의 60% (장려장학금 포함)
	B: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평생교육원 12학점 이상 이수자	B: 입학 첫 학기	B:수업료의 10%
교직원장학금	본교 교직원 본인, 배우자, 자녀 (직원: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, 교수: 전임교원)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 *교역자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	수업료의 20%
교역자장학금	한국연합회 산하 정규직 교역자 본인, 배우자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이사장 추천자로 연간 2인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 *교직원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	수업료의 20%

***교직원장학금, 교역자장학금, 공무원장학금, 산학협력장학금 중 1개만 선택, 중복 지급 불가**

5.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개정

다음과 같이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개정을 제안함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3조(모집 회수 및 시기)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1년 단위로 한다. ③ 신설	제13조(모집 회수 및 시기)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. ③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/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 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	제13조 개정 및 신설
제 14조의-1(편입학) ① 신설 ② 신설	제14조의-1(편입학) 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.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.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,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, 박사 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, 박사는 최소 2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	제14조-1 신설
제 16조(수업) ③ 신설	제16조(수업) ③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.	제 16조 신설